

부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493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임호택

2.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

피고, 항소인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19가단32496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피고 B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원고 : 주문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E(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 : 피고 B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98002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1. 20. 'E은 원고에게 1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0.부터 2006. 4. 2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 원고의 E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원리금은 2019. 7. 18. 기준으로 53,840,087원이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6477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22.

'D는 P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7,787,495원과 그 중 25,526,163원에 대하여 2010. 9. 1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8. 12. 확정되었다. 원고의 D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원리금은 2019. 7. 18. 기준으로 128,076,871원이다.

다. 한편 G(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1. 3.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D, 자녀인 H, E, 피고 B, I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 B는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4. 2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2019.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D와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4. 20.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C은 2019. 4. 25. 근저당권자 J조합에게 채권최고액 57,6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에 계속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적법한 수계

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수계인(E)이 2019. 10. 14.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2032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 5. 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1. 7. 5. 원고의 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당심에서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에 따라 원고 소송수계인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일부 청구부분(피고 B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수계하였으나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채권자취소 청구 부분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소송수계인이 수계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초과 상태인 D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그 당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 B와 D 사이에 2017. 1.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D의 상속분인 3/11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망인이 2017. 1. 3. 사망하였는바, 원고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했음에도 2019. 7.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의 가족인 망인이 사망한 때에 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실을 알았다거나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피고들은 D가 미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거나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들은, 피고 B에 대한 상속등기 및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유언에 따라 마친 것일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들이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생전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언을 하였다거나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손녀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20대 손녀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2년 3개월 가량이나 경과한 시점에 피고 B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C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마쳐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액배상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F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2020. 5. 6.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90,000,000원이고 당시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J조합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J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2017. 1. 3.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27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90,000,000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70,000,000원을 공제한 220,000,000원 중 D의 상속분 60,000,000원(= 220,000,000원 × 3/11)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30492 판결 등 참조).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가

생전에 장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상속 부분에 해당되는 금원을 소비한 사실이 있고 그 합계액이 21,248,820원에 이르므로 D의 상속분 60,000,000원에서 위 21,248,820원을 공제한 38,751,18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2017. 1. 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희, 판사 권현영, 판사 조윤정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공동주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4157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234.0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157900분의 10534

- 끝 -

